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중요부가통신시설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재난원인조사에 민간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재난안전 R&D 사업의 총괄부처로서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관련 기구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제16조)

정부조직법 개정('20.8.11.)으로 감염병 관련 복지부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당연직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여 재난안전 관련 기구의 정비를 추진함.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중복규정 삭제(안 제43조의12)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21.12.9.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법 제34조의8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함.

다.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안 제75조의3)

「재난안전법」상 재난원인조사와 개별 법령에 근거한 조사의 합리적 병행과 민간 전문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재난원인조사 총괄·조정 체계 강화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함.

* 「국정과제 65-2」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관련

이에 따라 기존에 조사기관만 참여하였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협의회를 민관합동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로 개편하고, 조사 및 개선과제 권고 등과 관련한 자문·심의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함. 아울러 재난원인조사 실시 전 협의회를 통해 민간전문가와 조사기관의 자문 및 조정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고려하여 조사실시 여부 및 조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및 행안부 자체조사반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단장(반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안 제78조의2, 제80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과 각 부처별로 진행하는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협의·조정할 수 있으나 자료요청, 투자 및 성과 분석, 환류 등 협의·조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됨.

이에 따라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및 상호연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권을 마련하고, 사업성과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시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신규지정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서해선전철 관리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서해철도주식회사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신규지정하고, 기관명이 아닌 시설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남서울경전철을 기관명으로 정비함.

* (기존) 서울교통공사와 서해철도주식회사 공동운영 → (변경) 서해철도주식회사

바.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가통신시설 추가(안 제30조 관련 별표2)

정보통신 분야 시설 중 통신망은 민간통신망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됐으나, 전산망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공공시설만 지정되어 데이터센터 등 부가통신시설*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업무에 필요한 주요 전산시스템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추가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빌려 기간통신업무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시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상청 및 산림청”을 “기상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산림청”을 “산림청,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43조의12를 삭제한다.

제75조의3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편성한다”를 “편성하되, 그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발하고,”를 “선발하고, 민간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운영”을 “운영과 재난원인조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영 제14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

(이하 “재난원인조사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재난원인조사 협의회에 사후 통보할 수 있다.

⑬ 제1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사단 구성 및 운영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여부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조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⑮ 재난원인조사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한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사업”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조정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요구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제72조에 따른 사업화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102호 중 “남서울경전철”을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로 하고, 같은 표 제103호를 제10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4호(중전의 제103호) 전단 중 “제102호”를 “제103호”로 한다.

103. 서해철도주식회사

별표 2의 정보통신의 지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상 황 감시시설 국가행정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주요 전산시스템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u>기상청 및 산림청</u> 2. ~ 7. (생략)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 ----- ----- -----. 1. ----- ----- ----- ----- ----- <u>기상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u> 2.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 ----- ----- ----- ----- ----- -----. 1. ----- ----- ----- ----- -----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생략)

나.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다. (생략)

2. (생략)

② (생략)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
영 및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안
전통신망”이라 한다)의 상시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
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관련 통신망
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 산림청, 질병관리
청-----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④ 재난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때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사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 수집·분석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생략)
<신설>

제75조의3(재난원인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 영 제14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이하 “재난원인조사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 재난원인조사 협의회에 사후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정부
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
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은 재
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
사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0
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
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원을
선발하고, 조사단원 중에서 조
사단장을 지명한다.

1. ~ 5. (생략)

④ ~ ⑪ (생략)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
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
는 관계 기관 상호 간의 정보
공유·활용과 제도개선 등의 협
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통보할 수 있다.

③ -----

----- 편성하
되, 그 중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선발하고, 민간전문가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⑫ (현행 제4항부터 제11
항까지와 같음)

<삭제>

⑬ 제1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를 실
시하지 않는 경우 중 행정안전

<신 설>

<신 설>

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원인조

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조사단 구성 및 운영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여부 및 방법과 제5항에 따른 개선권고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조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⑮ 재난원인조사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유형 등을 고려한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⑯ -----

-----.

사반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며,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반”으로, “조사단장”은 “조사반장”으로, “조사단원”은 “조사반원”으로 본다.

⑭ (생략)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및 개선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71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제7항-----

⑰ (현행 제14항과 같음)

⑱ ----- 제17항-----

----- 운영과
재난원인조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8조의2(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조정) ① -----
----- 재난 및 안
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신 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

2.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요구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신 설>

제80조의2(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 ① 행

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반

영하여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

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제72

조에 따른 사업화 지원 등 필요

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124